

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1563
------------	------

2016. 12. 19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2월 2일 김정태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2월 5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271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6.12.19.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정태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현재 광화문광장 내의 동상 및 조형물 등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동상 및 조형물 등을 새롭게 세우거나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광화문 광장 내 조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.
- 이에 시장의 관리의무에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,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함 (안 제3조제3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4. 검토보고의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(이하, 위원회)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6년 12월 2일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며,  
  
이와 연계하여 「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(이하, 열린광장 조례)도 발의된 상태임(의안번호 1564).
- 이 조례에는 위원회 심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열린광장 조례에 위원회에서 서울광장·청계광장·광화문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,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(이하, 조형물등)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임.
- 최근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이 논란이 되었는데, 이를 계

기로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며,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조형물이라 하면 텐트 등 임시구조물도 포함되므로,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조형물은 영구조형물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6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: 2016.12.19  
제안자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조형물을 영구조형물로 그 범위를 축소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“조형물 등”을 “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”로 조형물의 범위를 축소 규정함(안 제3조제3항).

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조형물 등”을 “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관리) ① ~ ② (생략) <u>〈신설〉</u>	제3조(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 항은 서울특별시 열린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 다.</u>	제3조(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 <u>조형물등(이 경우 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.

##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리) ① ~ ② (생략) 〈신설〉	제3조(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(이 경우는 “영구조형물”을 말한다)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